

의안번호	제122호
의결 연월일	2011년 월 일 (제 298 회)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1년 2월 25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22
----------	-----

제출연월일 : 2011년 2월 2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체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특례)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가 폐지되는 때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참고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협조하고 청렴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한다.

1.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청렴시책에 관한 사항
4. 부패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도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충청북도지사의 요구 시 충청북도 주관의 각종 감사 참여와 협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조계, 경제계, 학계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 : 10명 이내
2. 도의회 의원 : 2명 이내
3. 도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

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관실 소속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비밀엄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고) 간사는 운영상황을 수시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010. 3. 22. 제정, 2010. 7. 1. 시행 >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6. 30. 제정, 2010. 7. 1. 시행 >

제5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꺾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